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미용업 발전을 위한 미용업법 제정에 대한 연구

임도연O
O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e-mail: ehdus0673@kwu.ac.krO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eauty Business Act for the Development of Beauty Industry

Do-Yeon ImO
ODepartmen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키워드: 미용업(Beauty business), 미용업법(Beauty business act), 공중위생관리법(Public Health Management Act), 미용사면허(hairdresser's license), 미용업개설(Beauty business establishment)

I. Introduction

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있지만,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기원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과 소득증가로 인한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미용에 대한 수요도 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존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용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으로 정의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1961년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6년 공중위생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고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용관련 법률과 미용자격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미용업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인 미용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Beauty

1. Japan

일본은 1947년 처음 「이용사법」이 제정되어 이용업과 미용업을 함께 규정하였다가, 1957년 미용을 이용에서 분리하여 「미용사법」 및 미용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미용만의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미용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 미용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 미용사시험, 미용사 양성시설 기타 규정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미용사 양성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만이 도도부현지사가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일본의 미용사 자격취득 과정을 보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양성시설에서 미용사법에 따라 2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미용사 시험에 합격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때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여야만 미용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미용사가 될 수 있고, 관리미용사로 2년이 지난 다음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1].

2. America

미국은 각 주마다 각각 다르며 주마다 미용관련 개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뉴욕주를 예로 들면 일반상법 안에 미용사와 미용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법(consolidated laws)에 속해 있다. 동법에 의하면 면허신청자의 자격 심사권 및 시험실시 등을 미용업 관련 주무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지정된 의사의 면허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의무적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나타낸 서류와 증거 등이 충분하면 미용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된다. 미용사 면허 기간은 2년이며 이 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

3. France

프랑스의 경우 자격제도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1984년 새로운 법률의 공포를 통해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전국고용노사위원회가 관련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업관련 자격을 인증하며, 관련분야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 미용사로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헤어분야의 CPA(직업적성자격증)가 필요하며,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BP(직업교육수료증) 자격증이 필요하다. 미용기술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CAP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중학교 졸업의 경우에는 2년의 기술교육을 받아야 CAP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BP과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활동 및 연습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서이다[3].

4. England

영국의 경우 미용사면허 관련해서는 미용사(등록)법(Hairdressers(Registration) Act)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면허제도는 국가기술자격고시위원회(NVQ : National Vocational of Qualification)에서 각각의 기술분야 별로 주관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대학에 있는 미용학과나 미용전문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자신이 NVQs 이수신청 후 교육 기간동안 교과별 교사에게 수시 테스트를 받아 체크를 받은 다음 NVQ위원회에 제출하면 졸업을 하면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된다. NVQs는 기초수준인 1단계에서부터 고급수준의 5단계까지 총5개의 등급으로 11개분야 900여종의 자격을 부여한다[4].

III. Improvement Plan of the Hairdresser System

1. Enactment of Independent Beauty Business Act

현재 우리나라의 미용업은 질적양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고 고급화됨과 함께 전문화세분화 되어있다. 현재의 미용업은 과거 미용사로서 헤어만 담당하던 수준이 아니라 피부, 네일, 화장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전문적 업종으로 성장하였다. 미용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과 전문화에 따른 미용분야의 세분화된 영역들의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독자적인 미용업의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립된 미용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미용업은 함께 규정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등과 달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 등으로 영업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세분화된 미용영업 분야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그 특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미용업의 지속적 발전과 미용업을 하나의 전문적 직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미용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eauty Business Act

독립적인 미용업법 제정시 먼저 미용사면허제도의 체계적 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다른 보건분야 면허제도와 같이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받은 시 · 군 · 구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국적인 면허제도에 맞게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5].

또한 세분화된 각 분야의 자격을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미용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용업 영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처럼 미용에 대한 면허종목을 일반미용사, 피부미용사, 네일미용사, 화장분장 미용사, 종합미용사 등으로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3. Improvement of the licensing system

현재의 무시험 면허부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용업은 이제 단순 기술분야가 아닌 전문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전문대학 이상 미용학과 또는 고등학교 미용과를 졸업했거나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과정

의 수준이 다름에도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똑같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면허요건에 대한 규정들을 세분화하여 대학에서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면허와 고등학교 졸업자에 부여하는 면허,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자들에게 부여하는 면허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과정을 통하지 않아도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Improvement of the beauty business establish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한 제도는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되어 왔다. 처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가 통보제도로 변경된 뒤 다시 신고제로 바뀌어 있다. 사회적으로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퇴폐적 이용업·미용업이 성행했던 시기에는 허가제로 개설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시대의 상황을 보면 퇴폐적 미용업은 거의 사라지고 다른 분야의 변태적 영업이 성행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미용업 개설에 있어 미용인들의 질적 향상과 불법 시술 등의 변종 미용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견해[6]가 있으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만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구조상 신고제의 유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Ⅳ. Conclusion

우리나라의 미용업 발전을 위하여 현재 숙박업,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용업 분야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업법의 독자적 법률 제정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분류된 바에 따라 세분화된 분야의 자격 및 영업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미용업이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면허제도에 맞게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함이 타당하고,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용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걸맞게 제도적입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Young-sun Hong, “A Legal Study on Activation of the Beauty Care”, Dong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p51, 2020.

[2] Ju-ri Kim, “A Legislative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Beauty Industry and Beauty Professional Workers”, Dongguk University Ph.D. thesis, p.40, 2016.

[3] Jeong-a Yeon,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Beauty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44, 2004.

[4] Myeong-hun Si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Qualification System』,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Seoul, p44, 2001.

[5] Bo-ra Yee,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of Cosmetologist Act”, Ko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p72, 2009.

[6] Dong-hoon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Beauty System - Focused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osmetologist Act-”, Hans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p48, 2012.